[검토보고서]

2016. 2. 18(목) 제266회 임시회

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





[전문위원 최영인]

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개요

가. 제안자 : 양주시장(지역경제과)

나. 제출일 : 2016년 2월 4일

다. 검토일 : 2016년 2월 11일

2. 제안이유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등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, 판매사업, 저장소 등의 허가조건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고시로 정하였던 허가조건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『양주시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.저장소.충전사업 설치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』(양주시 고시 제2012-10호)의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조건을 대부분 준용하여 제정. (안 별표)
-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함. (안 별표)

4. 검토의견

가. 법령검토

- ○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4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,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을 정하고 있으며
- 기초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연접도로 기준 등의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나. 정책 및 내용검토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개정에 따라 기존 양주시 고시 2012-10호에 의거 고시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시설기준을 의견협의를 거쳐 조정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
-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규정보다 강화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연결도로 및 안전거리 기준 을 1.5배로 적용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연접도로 기 준을 2배로 적용하였으며,
- 이는 법에서 정한 최대허용 범위인 2배이내에서 정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.

- 액화석유가스 <u>충전사업</u> 허가기준

구 분	상위법령	양주시 조례 제정안	현행 고시
시설기준	저장능력별상이 (24m ~ 39m)	상위법령 <u>안전거리 기준의 1.5배</u>	상위법령 안전거리 기준의 1배
연접도로	8m	12m	8m

-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

구 분	상위법령	양주시 조례 제정안	현행 고시
시설기준	용기보관실:19㎡ 사무실:9㎡ 주차장:11.5㎡	상위법령 <u>시설면적 기준의 2배</u>	상위법령 시설면적 기준의 2배
연접도로	4m	8m	8m

라. 형식검토

○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.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마. 절차검토

○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개혁 심의 등의 제반절차 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